

## 2020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

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규정에 따라 「2020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1월 29일

**Kofpi** 한국임업진흥원장

### 1 시험일정

시행횟수	구분	원서접수	시험장소	시험일자	합격자 발표	비고
제2회	2차 시험	'19.12.23(월) 09:00 ~ '19.12.27(금) 18:00	원서 접수 시 공지	'20.2.1(토) ~ '20.2.2(일)	'20.2.28(금)	한국임업 진흥원 공고 (2018-01)
제3회	1차 시험	'20.3.16(월) 09:00 ~ '20.3.23(월) 18:00	원서 접수 시 공지	'20.4.25(토)	'20.5.18(월)	
	2차 시험	'20.6.15(월) 09:00 ~ '20.6.19(금) 18:00		'20.7.18(토) ~ '20.7.19(일)	'20.8.21(금)	
제4회	1차 시험	'20.9.7(월) 09:00 ~ '20.9.14(월) 18:00	원서 접수 시 공지	'20.10.24(토)	'20.11.16(월)	
	2차 시험	'20.12.21(월) 09:00 ~ '20.12.25(금) 18:00		'21.2.6(토) ~ '21.2.7(일)	'21.3.5(금)	

※ 2차 시험은 수험인원에 따라 1일만 시행할 수 있음(원서접수 시 최종 공지)

## 2

## 시험과목

### ■ 시험과목(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 제12조의6제2항 별표 1의2)

구분	시험과목	시험방법
제1차 시험	① 수목병리학 ② 수목해충학 ③ 수목생리학 ④ 산림토양학 ⑤ 수목관리학(가~다 포함) 가. 비생물적피해(기상, 산불, 대기오염 등의 피해) 나. 농약관리 다.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령	객관식 5지 택일형

※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·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·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

제2차 시험	① 서술형 필기시험 -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	논술형 및 단답형
	② 실기시험 -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, 약제처리와 외과수술	작업형

※ 문항수, 시험시간 등은 원서접수 시 공지

## 3

##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

가. 응시자격(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6, 산림청 고시 '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') - 아래

①, ②를 모두 갖추어야 함

①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4 관련

-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응시

② 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 제21조의6, 별표1 관련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교육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3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  - (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림기술사, 조경기술사, 산림기사·산업기사, 조경기사·산업기사, 식물보호기사·산업기사 자격
  - (2)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자격
  - (3)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(식물보호분야) 자격
5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6.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7.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
### <비고>

1. “수목진료 관련 학과”란 조경과, 농업과,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·처방하고,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함
2. “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”란 나무병원,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·처방·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함

※ ‘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’(산림청 고시)를 통해 정하고 있음

### 나. 결격사유(산림보호법 제21조의5)
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가 될 수 없음
  - (1) 미성년자
  - (2)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- (3) 「산림보호법」, 「농약관리법」 또는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## 4 합격자 결정

- 제1차 시험(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 제12조의6제4항)
  -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
- 제2차 시험(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 제12조의6제4항)
  -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술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

## 5

### 1차 시험 유예

-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하며,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함

## 6

### 응시원서 접수

#### 가. 접수기간

##### 1) 제2회 나무의사 자격시험

- 제2차 : 2019. 12. 23(월) 09:00 ~ 12. 27(금) 18:00 [5일간]

※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

##### 2) 제3회 나무의사 자격시험

- 제1차 : 2020. 3. 16(월) 09:00 ~ 3. 23(월) 18:00 [8일간]

- 제2차 : 2020. 6. 15(월) 09:00 ~ 6. 19(금) 18:00 [5일간]

※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

##### 3) 제4회 나무의사 자격시험

- 제1차 : 2020. 9. 7(월) 09:00 ~ 9. 14(월) 18:00 [8일간]

- 제2차 : 2020. 12. 21(월) 09:00 ~ 12. 25(금) 18:00 [5일간]

※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

#### 나. 접수방법

##### 1) 온라인 접수

- 온라인접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(<https://namudr.kofpi.or.kr>) 누리집에서 접수

- 응시자격 증빙 서류와 양성교육 교육이수증명서를 제1차 시험 원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

-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접수증을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됨
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(3.0cm × 4.0cm) 사진파일(jpg파일)을 등록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 후 원서접수
- ※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,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

## 2)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

-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시행기관 나무의사 자격관리 부서를 방문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지불이 완료되어야 접수한 것으로 봄
-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우체국에 접수하여 발송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함
- 응시자격 증빙서류와 양성교육 교육이수증명서를 원서접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
- 원서는 나무의사 자격시험(<https://namudr.kofpi.or.kr>) 누리집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함(원서 출력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같이 출력하여 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)

## 3) 접수시 유의사항

-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은 필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임
- 응시자격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응시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원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음
-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 응시 불가함

## 〈응시자격 증빙서류〉

### ■ 필수 증빙서류

- ① 양성기관 교육이수증명서<sup>1)</sup> + ② 응시자격요건 1-7(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)에 해당하는 증빙서류

### ■ 응시자격 요건별 증빙서류 서식(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)

1. 응시자격요건(1) : 해당 전공 석사, 박사 학위증<sup>2)</sup>
2. 응시자격요건(2) : 해당 전공 학사 + 경력증명서<sup>3)</sup>(경력 1년 이상)
3. 응시자격요건(3) : 해당 졸업증명서 + 경력증명서(경력 3년 이상)
4. 응시자격요건(4) : 해당 국가기술자격증(기술사, 기사, 산업기사), 국가전문자격증(문화재수리기술자-식물보호 분야), 국가공인민간자격증(수목보호기술자)
5. 응시자격요건(5) : 해당 국가기술자격(기능사) + 경력증명서(경력 3년 이상)
6. 응시자격요건(6) : 수목치료기술자 + 경력증명서(경력 4년 이상)
7. 응시자격요건(7) :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 경력증명서(경력 5년 이상)

<sup>1)</sup> 교육이수증명서[별첨 1], ‘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’ 별지1호 서식”에 의한 교육이수증명서, 교육기관 자체 수료증은 접수 불가

<sup>2)</sup>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,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(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) 후 한국어로 번역·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

<sup>3)</sup> 경력증명서는 산림청고시 ‘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’ 별지2호 서식에 따르며,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함[별첨 2]

※ 모든 서식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과 다름 없음을 확인받은 경우, 전자정부법 제39조에 의해 확인한 경우 등 공증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공증 받은 서류는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됨

#### 다. 수수료 납부

- 응시수수료 : 제1차 시험 20,000원, 제2차 시험 47,000원
- 납부방법 : 전자결제(신용카드, 계좌이체)

#### 라. 수수료 환불

- 수수료를 더 낸 경우 : 더 낸 금액 전부
  -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: 납부한 수수료 전부
  -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: 납부한 수수료 전부
  - 자격시험 시행일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: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
- ※ 환불신청은 온라인으로 '원서접수 취소'를 통해 가능(\*유선·방문으로는 환불신청 불가)

#### 마. 수험표 교부

-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수험표 출력 기간에 출력 또는 발급된 수험표를 시험당일 지참

#### 바.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 기재사항 수정 방법

- 「원서접수 기간 내」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 후 변경, 재접수 가능
- 「접수기간 종료 후」 시행기관 승인 후 변경 가능

#### 사. 시행기관

기관명	주소	우편번호	담당부서	연락처
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	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, 삼성생명둔산빌딩 5층	35209	나무의사 자격관리 부서	1600-3248, #4 (나무의사 자격시험)

## 7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[별첨3]

- 편의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, 임산부 등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유형 및 희망 편의제공 사항을 선택하고 원서접수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(장애인증명서)를 제출하여야 함



## 8

###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

#### 가. 공개 및 접수기간

- 제3회 : '20. 4. 25(토) 17:00 ~ 4. 29(수) 18:00, 5일간
- 제4회 : '20. 10. 24(토) 17:00 ~ 10. 28(수) 18:00, 5일간

#### 나. 공개 및 접수방법 : 나무의사 자격시험(<https://namudr.kofpi.or.kr>) 누리집을 통해 공개 및 접수

#### 다. 가답안에 대한 의견 제시는 개별회신 하지 않으며,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같음

## 9

###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

#### 가. 합격자발표

##### 1) 제2회 나무의사 자격시험

- 제2차 시험 : 2020. 2. 28(금) 09:00

##### 2) 제3회 나무의사 자격시험

- 제1차 시험 : 2020. 5. 18(월) 09:00
- 제2차 시험 : 2020. 8. 21(금) 09:00

##### 3) 제4회 나무의사 자격시험

- 제1차 시험 : 2020. 11. 16(월) 09:00
- 제2차 시험 : 2021. 3. 5(금) 09:00

##### 4) 발표방법

- 나무의사 자격시험(<https://namudr.kofpi.or.kr>) 누리집 [30일간]

#### 나. 자격증 발급

- 자격증 발급신청서[별첨 4]를 작성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자격증 발급 신청
- 자격증 발급 수수료 17,000원

###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

1)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·위조·기재오기·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.

※ 원서접수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기재

2)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(단,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) 시험 당일 입실시간까지 신분증, 수험표,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.

※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

※ 신분증 인정범위 : 주민등록증(주민등록발급신청서)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여권, 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, 국가유공자증, 외국인등록증,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, 영주증, 신분확인 증명서(군인에 한함, 부대장이 발급), 국가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 포함, 단,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은 불인정), 정부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

※ 신분증 미 소지자는 시험 후 3일 이내 신분증을 소지하고, 자격시험 담당자에게 확인 받아야 함(미 확인자는 시험 무효로 처리)

3) 답안카드(답안지)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.

4)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5)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,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※ 시험시간은 타종(벨)에 의하여 관리되며,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임.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

6)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 전에 리셋(초기화)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,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

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. 리셋 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[별첨 5]로 간주합니다.

※ 단, 메모리(sd카드포함)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

- 7)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[휴대용 전화기,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(PDA),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(PMP), 휴대용 컴퓨터, 휴대용 카세트, 디지털 카메라, 음성파일 변환기(MP3), 휴대용 게임기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, 스마트워치 등을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, 금속(전파) 탐지기 수색 등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.

※ 소지품 정리시간(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) 이후 시험 중 전자·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·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(퇴실) 및 무효(0점) 처리

- 8)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, 시험시간 1/2 경과 전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시험시간 1/2 경과 전 ‘시험포기각서’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·응시 불가 및 시험 무효처리

※ 배변 장애 편의 제공은 ‘별첨 3’을 참고

- 9)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(답안지)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(답안지)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10)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되며,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11) 시험문제지는 수험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.
- 12) 가답안은 나무의사 자격시험(<https://namudr.kofpi.or.kr>)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13) 이의제기는 의견제시 접수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.
- 14)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,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하시기 바랍니다.

- 15)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합니다.
- 16)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

- 1)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- 2)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,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배부된 문제지를 확인하여 유형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.
- 3)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4)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에는 답안 카드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으나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(전산자동 판독불가 등)은 수험자의 귀책사유입니다.
  - ※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
  - ※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의 내용은 수정테이프 사용불가
- 5)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카드 기재착오, 불완전한 마킹, 수정, 지정 필기구 미사용 등 부주의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입니다.

### 제2차 서술형 필기시험 수험자 유의사항

- 1)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'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'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- 2) 수험자 인적사항·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(그 외 연필류,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0점 처리합니다).
- 3)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(=)로 긋고 표시하여야 하며, 두 줄로 긋지 않은 답안은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. 또한 수정테이프(액)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- 4)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란 외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,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합니다.
- 5) 제2차 시험 채점은 과정(서술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)별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하므로 미응시 과정은 0점 처리됩니다.  
 ※ 제2차 시험의 점수는 총득점만 공개되며, 채점관련자료(채점 기준 세부내역 등)는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.

### 제2차 실기시험 수험자 유의사항

- 1) 수험자 인적사항과 답안 작성시는 검정색 필기구 한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(그 외 연필류, 유색필기구, 3가지 이상 색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).
- 2) 실기시험의 진행은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며, 각 과제별 작업은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험자의 귀책사유입니다.
- 3) 작업의 과정이 채점대상인 경우는 채점 대상과정을 시험위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.
- 4) 시험이 종료되면 작업을 즉시 멈추고 문제지와 작업결과를 채점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남은 시간을 다른 과제 또는 작업시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5) 지급재료는 수험 시작 전에 확인하여 재료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험이 시작된 후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.

**☞ 나무의사 자격의 엄정·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, 시험 시행·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누리집을(<https://namudr.kofpi.or.kr>) 참조 또는 나무의사 자격관리 부서(1600-3248)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**

# [별첨 1] 양성교육 교육이수 증명서

■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[별지 제1호서식] <신설 2018.6.00>

## [ ] 나무의사 양성교육 교육이수 증명서 [ ] 수목치료기술자

학 습 자	이 수 번 호	기관명(요약)-년도-일련번호	생년월일
	성 명		전화번호
	교 육 기 간	20 . . . . ~ 20 . . . . ( 시간)	
	총 교 육 시 간 (실 교육시간)		

교육 과목 및 교육 시간	교육과목	교육시간	교육과목	교육시간

「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 기술자 양성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양성기관의 장 직인

210mm × 297mm 백상지(80g/㎡)



## [별첨 3] 장애인 등 응시편의 사항

# 나무의사 자격시험 장애인 등 응시편의 사항

편의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, 임산부 등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유형 및 희망 편의제공 사항을 선택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**4일 이내**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**증빙서류를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구 분	내 용
편의제공 대상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</li> <li>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</li> <li>3. 기타 장애, 질병,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</li> </ol>
편의제공 증빙 (서류제출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1부</li> <li>2.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부위 및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</li> <li>3. 의사 진단서 사본 1부(배변장애 등의 진단서는 시험 응시에 불편사항 및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함)</li> </ol>
편의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시험시간은 편의제공 대상자의 장애 종류에 따라 최대 1.2배 연장할 수 있음(이 경우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)</li> <li>2. 편의제공 대상자가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시험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구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함</li> <li>3. 편의제공 대상자가 도우미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응시자가 장애로 제한받는 신체적 기능을 고려하여 편의제공 도우미(감독관)를 배치함</li> <li>4. 청각장애인 편의제공 대상자가 수화 통역을 요청하는 경우 수화 통역사를 배치함(수화 통역의 범위는 방송, 시험안내 등에 한함)</li> <li>5. 편의제공 대상자에게는 출입, 화장실 이용(배변장애 등), 냉난방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험실을 배정함</li> </ol>



## [별첨 4] 자격증 발급 신청서

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의4서식] <신설 2018. 6. 28.>

### [ ] 나무의사 [ ]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 15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성별
	주소	전화번호	
자격 취득 사항	[ ] 있음 [ ] 없음		
	종목	합격일	
경력사항	[ ] 경력 있음 [ ] 경력 없음		
	근무기간		
	근무처명(사업체)	전화번호	
	근무처 소재지		

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자격증 발급기관 귀하

※ 자격증 발급기관은 「산림보호법」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합니다.

신청인 제출서류	1.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.5cm×4.5cm 증명사진 1장 3. 대리인의 신분증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
----------	---	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## [별첨 5] 부정행위 처리 규정

### 수험자 부정행위 처리

구 분	내 용
부정 행위자 처리	『부정행위자는 법 제21조의8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,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』
부정 행위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사람</li> <li>2. 문제지 및 답안지 등을 교환하는 사람</li> <li>3.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을 엿보거나 답안을 가르쳐 주는 사람</li> <li>4. 시험장 내·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 등을 작성하는 사람</li> <li>5.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사람</li> <li>6.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사람</li> <li>7.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사람(양 당사자 모두 부정행위)</li> <li>8.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사람</li> <li>9.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[휴대용 전화기,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(PDA),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(PMP), 휴대용 컴퓨터, 휴대용 카세트, 디지털 카메라, 음성파일 변환기(MP3), 휴대용 게임기, 전자사전, 카메라 펜,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, 스마트워치 등을 휴대·사용하는 사람</li> <li>10.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람</li> <li>11. 시험장을 소란하게 하거나 시험장내 기물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는 사람</li> <li>12. 시험종료 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문답지 제출에 불응하는 사람</li> <li>13. 시험감독위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</li> <li>14.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사람</li> </ol>
사후 적발 처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</li> <li>2.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지</li> </ol>